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149
------	------

2021. 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3.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은 낙원상가 1층에 위치한 공공시설을 악기강습, 악기나눔 중심의 공공시설을 도심권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

나.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 소재지 : 종로구 삼일대로 428(낙원상가 1층 하부도로)
- 시설규모 : 580㎡(큐브 11개)
- 개관일 : '20. 10. 27.

다. 위탁기간 : '22. 8. 9. ~ '25. 8. 8.(3년간)

라. 민간위탁금(안) : 756백만원 ('23년 기준)

마. 위탁사무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관리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의 공연, 교육 등 시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설물과 기타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은 낙원악기상가 일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악기강습 및 악기나눔 중심의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서
- 문화시설 운영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 및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아울러 시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아. 심의결과 : 적정('22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나. 예산조치 : '23년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악기강습이나 악기나눔 중심의 생활문화 활동 공간인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의 민간위탁기관 만료일(2022.8.8.)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현황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은 당초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상가)’ 조성 기본 운영계획(문화정책과-9852호 2018.8.16.)에 따라, 쇠퇴한 서울시 미래유산인 낙원상가의 역사성과 특성을 유지하며 도시재생사업과 문화가 접목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이를 촉매제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등 악기·음악 중심의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조성되었음.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현황 〉

- ▶ 소 재 지 : 종로구 삼일대로 428(580㎡, 큐브11개)
- ▶ 수탁기관 : 기분좋은큐엑스(주)
- ▶ 수탁기간 : 2019.8.9.~2022.8.8.
- ▶ 공간현황 : 역사갤러리, 안내센터, 수리공방센터, 녹음스튜디오, 연습실 등
- ▶ 사 업 비 : 시설형 위탁, 425백만원(2022년)
- ▶ 주요사업 : 공간 운영,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및 전시 기획·운영 등
- ▶ 운영인력 : 8명

- 2020.10.27. 개관하여 생활음악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악기 대여 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관 운영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센터의 제한적 운영과 휴관 조치로 실적이 저조한 편임.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사업 실적〉

연도별	대관동아리수	공간이용인원	악기증나눔	악기대여	생애첫음원 만들기	만족도
2021년	41개	1,532명	811점	426점	36명	92%
2020년	38개	1,496명	1,113점	13점	62명	미실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는 시장이 민간위탁 기관의 기간만료 90일 전(2022.5.10.)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간 미도래로 정확한 결과는 공유되지 않았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해 연 1회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본부 부서 차원의 평가만 받아왔음.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은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2022.2월) ‘적정’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타 유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어 예산 타당성 재검토’를 권고받음.
- 서울시 조직담당관의 평가는 서울생활문화센터 4곳(낙원·체부·신도림·서교)을 단순하게 면적대비 인건비로 비교하여 권고한 것으로 낙원의 구조가 분리된 공간으로 형성되어 각 공간(큐브, 11개)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공간상의 문제로 더 많은 관리인력이 필요해 비용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음.

〈2022년 기준 서울생활문화센터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센터명 (규모)	인원	공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
낙원 (580㎡)	6명	11개	205,780(48.4%)	109,287(25.7%)	110,000(25.9%)	425,067
체부 (467㎡)	6명	4개	179,099(55.8%)	67,293(21.0%)	74,734(23.3%)	321,126
신도림 (753㎡)	4명	7개	147,117(52.2%)	77,467(27.5%)	57,500(20.4%)	282,084
서교 (4423㎡)	9명	8개	307,816(50.7%)	252,503(41.6%)	47,120(7.8%)	607,439

- 또한 2020년과 2021년 지도·점검 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물품과 약기 등 관리대장, 안전점검일지의 보완, 불편사항 건의 창구 마련 등 4건의 지적사항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있던 만큼 지적사항에 대한 엄중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문화콘텐츠의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예산대비 효율성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¹⁾’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생활문화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문화예술 교육 제공(32.2%)’, ‘주민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22.5%)’, ‘상시 공간활용(14%)’,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11.7%)’, ‘악기·전자기기 등 장비 대여(9.8%)’, ‘연습실, 회의실 등 공간대여(8.7%)’ 순으로 나타났음.
- 이에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은 연습실(大, 小), 강의실, 회의실, 다목적홀 등 공간은 협소하지만 여러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됨.

1) 노수경 외,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09 정책연구, p.116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49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은 낙원상가 1층에 위치한 공공시설을 악기강습, 악기나눔 중심의 공공시설을 도담권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
- 나.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 소재지 :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1층 하부도로)
 - 시설규모 : 580㎡ (큐브 11개)
 - 개관일 : '20. 10. 27.
- 다. 위탁기간 : '22. 8. 9. ~ '25. 8. 8.(3년간)
- 라. 민간위탁금(안) : 756백만원 ('23년 기준)
- 마. 위탁사무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관리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의 공연, 교육 등 시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설물과 기타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은 낙원악기상가 일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악기강습 및 악기나눔 중심의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서
- 문화시설 운영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 및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아울러 시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아. 심의결과 : 적정('22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센터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나. 예산조치 : '23년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주효근(☎2133-2543)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